

# **1** 감염병 의심자 이해하기

# 감염병 의심자 이해하기: 두 종류의 사람

아픈 사람

격리(Isolation)

- 감염된 사람/아픈 사람을  
건강한 사람과 분리하는 것

아플 수 있는 사람

검역?(Quarantine)

-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 
개인들에 대해 이동을  
제한하거나 분리시키는 것

# 방역조치 개요

## 아픈 사람

### 역학조사

- 접촉자 조사를 통해
- 추가 환자를 조기 발견
- 전파 차단 효과

## 아플 수 있는 사람

### 검역 또는 자가격리

- 선별진료소 검사
- 최대 잠복기까지 분리

# 감염병의심자는 아플 수 있는 사람(접촉자)인가?

사례정의 집단 구분	미생물학적 확인	감염병을 시사하는 증상 등
감염병환자	○	○
감염병의사환자	X	○
병원체보유자	○	X
감염병의심자(새로운 분류)	X	X

가.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"감염병환자등"이라 한다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(이하 "접촉자"라 한다)

나.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다.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## 소결

- 감염병 의심자는 역학조사의 대상이 아니다.
- 감염병 의심자는 접촉자를 포함하지만, 이를 넘어서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집단이다.
- 감염병 의심자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집단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
  - 전파 차단이 목표인가?
  - 이들의 보호와 지원이 목표인가?

## **2**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의심자

#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의심자

-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이다.
  -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    - 자가...시설...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.
  - !! 제42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
    -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, 위치정보의 수집, 감염여부 검사
  -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
    - 국내 감염 외국인이 비용 무료. (!! 감염병 의심자가 감염인?)
  - 제70조의6(심리지원)

#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의심자

- 아픈 사람인가, 아플 수 있는 사람인가
  - 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
    -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
  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    -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
- 역학조사의 대상인가?
  - 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)
    - 어떤 정보를 요청할 것인가? 동선?



# 역학조사의 대상(코로나19 대응지침 9-3판)

- 조사대상 유증상자(Patient Under Investigation, PUI)
 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(PUI 1)
 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(PUI 2)
 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(PUI 3)

\*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(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)

- ①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-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-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

※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

# 접촉자 선정의 어려움

## 【접촉자 범위 예시】 (WHO 5. 10. 기준)

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

- 1)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
- 2)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
- 3) 적절한 개인보호구[부록 8]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
- 4) 거주 국가(지역)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

※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,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

## 결론

-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.
-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심자를 환자로 보는지(47조), 접촉자로 보는지(49조) 불분명하다.
-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심자를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본다(역학조사용 정보제공: 76조의 2)
- 지침으로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다면, 법에 포함될 이유가 있는가?